



제319회 임시회

2013. 4. 16.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상필 의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4월 5일

○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3. 제안이유

충북도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충북도내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교육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다.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5조)

- 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교육감은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 평생 교육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충북도내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교육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 안 제4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우리 도의 특징과 필요를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5조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6조에 학교도서관 자원 봉사회 운영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안 제7조에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편성 하도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 안 제8조에 학교도서관과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한 실정인 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와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독서교육이 증진되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발 췌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직원"이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직원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

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 · 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 · 제작 ·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 ·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 · 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 ·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 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 · 배치기준 ·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 · 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 ·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 · 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 ·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 · 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 ·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독서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업무협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 제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 · 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 · 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20824호, 2008. 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 <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 학교